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9호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5 1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제 1 5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입법예고
- 공 고 제 1 5 1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
규칙(안) 입법예고
- 공 고 제 1 5 1 9 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2018년 1월 1일 기준 25
정정가격 공시
- 공 고 제 1 5 2 2 호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직권폐업 공고 27
- 의 회 사 무 국 제 2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31
공 고
- 의 회 사 무 국 제 2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3
공 고

고 시

- 고 시 제 1 0 5 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공고 및 게재 54
- 고 시 제 1 0 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사업 실시계획(정정 67
및 변경) 고시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 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정함

(안 제3조제1항 제1조부터 제4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일부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불명확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라. 소급에 대한 부칙규정을 “2019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으로 개정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조례 제1393호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5883, FAX 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

5.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정함
(안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일부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불명확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 지원 규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조례 제1393호 부칙)

☐ 본 문

☐ 신 · 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입양특례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섯째 이상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되 ,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5개월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넷째자녀 500만원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제4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남동구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양육하는”을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019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부분 유지·관리 관련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시설 관리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사목, 아목)
- 안전점검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지원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건축과/ 453-2794,
FAX 453-27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
예고)

4.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 관련 사업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부분 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사목, 아목)
-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다목)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자문 비용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 본 문☐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아.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중 D, E등급에 한정한다)

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상담 등에 참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 담 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30	7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 사업의 경우는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중앙정부, 인천시 등과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30	7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	7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0	70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0	7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0	7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	7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 담 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50	50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50	50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50	50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보안등 등)의 유지·보수	50	50	
5.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관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50	50	
6. 다세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 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50	50	
7.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한정한다)	50	50	
8.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의 제외한다)	50	5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50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제4조제1항제3호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70	3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긴급보수 공사 (아파트 연립주택 D, E등급에 한정한다)	70	30	
3.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한정한다)	70	30	

2.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비고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시 지원금 산정(예시)
- 지원액 = (1천만원×0.3) + (1천만원×0.3×0.1) + (1천만원×0.3×0.1) = 3.6백만원

의 무 관 리 대 상 이
아닌 공동주택

인근지역주민포함

나. 공용시설물 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2. ----- ----- -----. ----- ----- -----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사.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u>
<u><신 설></u>	<u>아.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 제외한다)</u>

사. (생 략)

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삭 제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지원금의 지원비율)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생 략)

자. (현행 사목과 같음)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중 D, E등급에 한정한다)

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

-----.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장기수선계획서(법 제47조제1항 적용대상에 한한다) 사본 1부

3. 4. (생 략)

③ ④ (생 략)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③ -----

----- 한정한다. -----

-----.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한정한다 -----

3. 4.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u>·상담 등에 참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전액 지원금액 한도를 증액하고 재난 관리시설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전액 지원금액 한도증액 (안 제2조제2항)
- 재난관리시설 구체적 명시 (안 제2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건축과 / 453-2794, FAX 453-27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전액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용부분 관리가 취약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전액 지원 금액 확대(안 제2조 제2항)
- 보조금 지원 범위 대상 중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 대상 구체화(안 제2조 제2항 제2호)

☐ 본 문

☐ 신·구대조표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옹벽·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생략)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u>500만원</u> 이하의 전액을 <u>500만원</u> 초과시에는 <u>500만원</u>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	② ----- ----- ----- <u>700만원</u> ----- ----- <u>700만원</u> ----- <u>700만원</u>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u>	2. <u>재난관련시설 보수 사업 (위험 담장·옹벽·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난간에 한정한다.)</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19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2018년 1월 1일 기준 정정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9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 나. 공시 기준일: 2018년 6월 1일
- 다. 개별주택수: 61호
- 라.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 마.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2.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 공시

- 가.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 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독주택
- 나. 공시 기준일: 2018년 1월 1일
- 다. 개별주택수: 2호

라.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마.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3. 이의신청방법

가. 기간: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신청인: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방법: 남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

라. 처리: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22호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직권폐업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업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18.(21일간)
2. 직권폐업 예정일 : 2018. 10. 18. (목)
3. 대상업소

업종	상호	대표자	시설주소	처분 예정사항
체육도장업	태양 체육관	이○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30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일검관검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1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수지태권도	이○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2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승운태권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5번길56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만수유도회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4-14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신한국체육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20번길6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천인체육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6-15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간석한미태권도장	연○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38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용인대정인태권도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49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논현가람태권도장	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14, 301호 (논현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재훈태권도체육관	장○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5-1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청솔태권도체육관	장○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2 (구월동,3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우슈정무관	조○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4 (만수동,3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석사태권도체육관	허○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67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키즈태권도리틀체육관	이○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14 (간석동,202호)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원진유도관	최○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22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대호체육관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1번길 29 (간석동,4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부평태권도전문체육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41-3, 301호(은빛프라자)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최강태권도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37-69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인천유도체육관	박○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1번길 32, 지하층 (간석동, 우성2차상가)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알바트로스 스크린골프	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2 (구월동, 신현프라자)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SF휘트니스	김○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38 (구월동,4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골프CNC	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39 (만수동, 501,502호)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베스트골프연습장	정○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23 (간석동,베스트프라자 2,3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간석스크린골프연습장	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0 (간석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I.C노블휘트니스클럽	김○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128 (구월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SK골프휘트니스	전○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163, 701호 (구월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프렌즈골프연습장	정○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23 (간석동,1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세븐스크린골프	이○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16, 701호 (구월동, 세동네오스빌딩)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수 스크린골프	조○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18 (구월동, 410~412호)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크린필드	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6-8 (논현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신성골프아카데미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6-4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크린골프투어	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65-1 (만수동, 건주프라자 4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맥스 스크린골프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25 (구월동, 대흥빌딩 1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후 멀티휘트니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11 (간석동, 간석오피앙 2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홀인원 스크린골프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51 (논현동,홀인빌딩 801호)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JK GOLF 연습장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1, 201,202호 (구월동, 노빌리안)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파온 스크린 골프	김○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55, 3층(구월동, 건영프라자)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골프존파크간석오거리점	백○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9 (간석동,(2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포라인	사○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논현동, 아름다운 타워 3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오렌지포스헬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31 (간석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만수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5-26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로얄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69번길38 (만수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용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3 (만수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하리헬스클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대성헬스클럽	임○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3 (간석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I.C노블휘트니스클럽	김○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8 (구월동,(3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프로헬스클럽	고○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6번길 55,2층(구월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희망헬스다이어트타운	심○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5 (만수동,3,4,5호 희망프라자5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월드휘트니스	박○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54, 801호 (간석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라이프헬스	방○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9 (구월동,3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INC스포츠트레이닝센터	최○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258 (간석동, 신비프라자2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에이취 휘트니스클럽	심○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01, 301호 (만수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후 멀티휘트니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 (간석동, 3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스카이헬스	이○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51 (만수동)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S&P 클럽	오○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5, 303호 (논현동, 씨티짱)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스포라인	사○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논현동,아름다운 타워 3층)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포시즌 스포츠	정○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15-0, 2층 (구월동)	직권폐업
당구장업	풍림당구클럽	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17 (남촌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태양 체육관	이○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30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일경관검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1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수지태권도	이○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2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승운태권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5번길56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만수유도회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4-14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신한국체육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120번길6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천인체육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6-15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간석한미태권도장	연○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38 (간석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용인대정인태권도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49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논현가람태권도장	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14, 301호 (논현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재훈태권도체육관	장○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5-1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청솔태권도체육관	장○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2 (구월동,(3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우슈정우관	조○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4 (만수동,3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석사태권도체육관	허○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바촌로67 (만수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키즈태권도리틀체육관	이○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14 (간석동,202호)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원진유도관	최○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22 (구월동)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대호체육관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1번길 29 (간석동,4층)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부평태권도전문체육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41-3, 301호(은빛프라자)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최강태권도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37-69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인천유도체육관	박○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1번길 32, 지하층 (간석동, 우성2차상가)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알바트로스 스크린골프	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2 (구월동, 신현프라자)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SF휘트니스	김○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38 (구월동,4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골프CNC	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39 (만수동, 501,502호)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베스트골프연습장	정○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23 (간석동,베스트프라자 2,3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간석스크린골프연습장	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0 (간석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I.C노블휘트니스클럽	김○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128 (구월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SK골프휘트니스	전○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163, 701호 (구월동)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프렌즈골프연습장	정○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23 (간석동,1층)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세븐스크린골프	이○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16, 701호 (구월동, 세동네오스빌딩)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수 스크린골프	조○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18 (구월동, 410~412호)	직권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크린필드	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6-8 (논현동)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신성골프아카데미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6-4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크린골프투어	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65-1 (만수동, 건주프라자 4층)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맥스 스크린골프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25 (구월동, 대흥빌딩 1층)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후 멀티휘트니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11 (간석동, 간석오피앙 2층)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출원원 스크린골프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51 (논현동, 흥인빌딩 801호)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JK GOLF 연습장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1, 201,202호 (구월동, 노빌리안)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파온 스크린 골프	김○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55, 3층(구월동, 건영프라자)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골프존파크 석오거리점	백○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9 (간석동,2층))	직권 폐업
골프연습장업	스포라인	사○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논현동, 아름다운 타워 3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오렌지포스헬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31 (간석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만수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5-26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로알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69번길38 (만수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용헬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3 (만수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하리헬스클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대성헬스클럽	임○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3 (간석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I.C노블휘트니스클럽	김○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8 (구월동,(3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프로헬스클럽	고○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6번길 55,2층(구월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희망헬스다이어트타운	심○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5 (만수동,3,4,5호 희망프라자5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월드휘트니스	박○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54, 801호 (간석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라이프헬스	방○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9 (구월동,3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INC스포츠트레이닝센터	최○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258 (간석동, 신비프라자2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에이취 휘트니스클럽	심○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01, 301호 (만수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후 멀티휘트니스	신○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 (간석동, 3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스카이헬스	이○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51 (만수동)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S&P 클럽	오○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5, 303호 (논현동, 씨티짱)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스포라인	사○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논현동,아름다운 타워 3층)	직권 폐업
체력단련장업	포시즌 스포츠	정○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15-0, 2층 (구월동)	직권 폐업
당구장업	풍림당구클럽	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17 (남촌동)	직권 폐업

4.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5. 기타사항

- 의견제출 : 내용에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중 당사자 소명자료 제출
- 2018년 9월 27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의거 직권폐업(말소) 처리

6. 의견제출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체육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번호 : 032-453-2155/ FAX:032-453-2139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8-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27. ~ 10. 08.

4.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1,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9.

발 의 자 : 신동섭, 반미선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2명

☐ 제 안 이 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8조)

☐ 본 문☐ 참 고 자 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제14조, 제33조, 제3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신 동 섭 의원 (인)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8-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장사 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안 제2조)
-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안 제6조)
- 지급 제외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7 ~ 10. 8 (1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77
----------	------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27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강경숙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안 제2조)
-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안 제6조)
- 지급 제외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안 제8조)

☐ 본 문☐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 제23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4조(지급금액)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② 구청장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접수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	
	지급은행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망자 화장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사망일	. . .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화장일	. . .	화장장소		
구비서류	1. 화장 증명서 1부. 2.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4. 사망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금액) 규정
으로 차상위계층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
급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차상위계층 보장탈피(사망) 인원 추계(2011~2018년) 반영

나. 추계 결과

- 차상위계층 현황 : 6,376가구 10,898명(2018.8월 현재)
○ 차상위계층 보장탈피(사망) 현황(2011년~ 2011년 8월)

구분	가구수	수급권자(명)	참고
계	807	1,633	연평균(2011~17년) 218명
2018	53	109	
2017	128	259	
2016	95	192	
2015	104	214	
2014	95	190	
2013	110	223	
2012	104	209	
2011	118	237	

- 연간 소요예산액 : 220명 x 160,000원 = 35,2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176,000
화장 장려금 지원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17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5,200	35,200	35,200	35,200	176,000
	지방세		35,200	35,200	35,200	35,200	176,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 2.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5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1(101,102,201,202,301,401)외 43건

번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구분	부여구분
별 도 열 람(4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하였습니다.

대상자		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개별호수판갯수
소유자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1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401호	6
소유자	임○덕			
임차인	박○은			
임차인	이○정			
임차인	곽○순			
임차인	김○재			
임차인	김○일			
임차인	최○철			
소유자	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1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401호	16
소유자	정○영			
임차인	이○산			
임차인	문○화			
임차인	양○규			
임차인	이○연			
임차인	김○윤			
임차인	조○원			
임차인	김○성			
임차인	변○실			
임차인	임○규			
소유자	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90번길 5 (구월동)	지하101호 101호 201호	3
소유자	정○정			
임차인	한○숙			
임차인	한○숙			
임차인	정○정			
임차인	김○란			
임차인	김○란			
임차인	정○정			

소유자	김○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90번길 9 (구월동)	101호 201호 301호	3
임차인	김○홍			
소유자	오○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90번길 22 (구월동)	101호 201호,202호	3
임차인	정○실			
소유자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68번길 23-17 (구월동)	101호 201호	2
임차인	윤○윤			
소유자	이○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68번길 23-25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401호	6
소유자	김○옥			
임차인	김○현			
임차인	채○주			
소유자	이○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6-6 (구월동)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	10
임차인	안○옥			
임차인	석○정			
임차인	이○련			
임차인	김○미			
임차인	신○수			
임차인	정○애			
임차인	박○애			
소유자	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08-3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 101호,102호 201호	5
임차인	김○선			
임차인	박○현			
임차인	민○미			
임차인	최○주			
임차인	지○아			
소유자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08-4 (구월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 301호	6
임차인	권○삼			
임차인	경○직			

임차인	박○자			
임차인	김○근			
임차인	김○년			
임차인	안○민			
소유자	권○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47번길 9 (간석동)	101호,102호	2
임차인	김○회			
임차인	권○삼			
소유자	한○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3-12 (간석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203호 301호,302호	8
임차인	홍○현			
임차인	황○영			
임차인	고○성			
임차인	윤○경			
임차인	안○민			
임차인	장○영			
임차인	방○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72-22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202호,203호 301호,302호,303호,304호,305호 401호,402호,403호,404호,405호 501호,502호,503호,504호,505호	20
소유자	신○은			
소유자	신○수			
임차인	김○택			
임차인	김○남			
임차인	이○진			
임차인	김○중			
임차인	김○회			
임차인	정○희			
임차인	이○모			
임차인	안○계			
임차인	김○영			
임차인	홍○학			
임차인	박○성			

소유자	신○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42-1 (구월동)	101호 201호	2
임차인	신○근			
임차인	최○옥			
소유자	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42-2 (구월동)	101호 201호 301호	3
임차인	박○순			
소유자	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54-7 (구월동)	101호 201호	2
소유자	임○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4-5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1
임차인	조○선			
임차인	김○재			
임차인	하○섭			
임차인	박○호			
임차인	정○훈			
임차인	여○근			
임차인	박○규			
임차인	한○현			
임차인	서○호			
임차인	정○섭			
소유자	윤○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0-10 (구월동)	101호 201호 301호	3
임차인	최○숙			
소유자	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02번길 14-5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3
임차인	김○연			
임차인	안○목			
임차인	정○진			
임차인	최○솔			
임차인	서○솔			
임차인	조○호			
임차인	노○숙			
소유자	곽○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20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3

소유자	이○재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임차인	유○주			
임차인	서○휘			
임차인	용○중			
임차인	김○웅			
소유자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3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305호,306호,307호,308호 401호,402호,403호,404호,405호,406호,407호,408호 501호,502호,503호	25
임차인	주○우			
임차인	망절○옥			
임차인	김○희			
임차인	민○옥			
임차인	정○영			
임차인	최○재			
임차인	조○도			
임차인	문○철			
임차인	이○근			
임차인	정○호			
임차인	정○화			
임차인	동○			
임차인	김○민			
임차인	박○권			
임차인	김○예			
임차인	김○아			
임차인	김○희			
임차인	정○혜			
소유자	최○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3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3
임차인	위○균			
임차인	이○호			
임차인	김○덕			

임차인	이○승			
임차인	전○현			
임차인	백○현			
소유자	백○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6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16
소유자	최○희			
임차인	김○하			
임차인	임○호			
임차인	김○현			
임차인	이○현			
임차인	이○운			
임차인	유○혁			
임차인	전○우			
임차인	박○희			
임차인	한○만			
임차인	노○진			
임차인	김○진			
소유자	정○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6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3
임차인	김○래			
임차인	김○모			
임차인	이○림			
임차인	정○환			
임차인	정○영			
임차인	김○일			
임차인	김○현			
임차인	송○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29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401호	11
소유자	최○옥			
임차인	지○엽			
임차인	강○훈			

임차인	김○수			
임차인	우○숙			
임차인	심○희			
소유자	양○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20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3
임차인	허○혁			
임차인	김○은			
임차인	조○숙			
임차인	김○경			
임차인	이○순			
소유자	지○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24 (구월동)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12
임차인	최○애			
임차인	은○기			
임차인	이○현			
임차인	추○영			
임차인	이○임			
임차인	편○범			
소유자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19 (구월동)	101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401호,402호,403호,404호 501호	14
임차인	박○철			
임차인	곽○자			
임차인	남○현			
임차인	김○이			
임차인	박○주			
임차인	김○성			
임차인	변○호			
임차인	천○순			
임차인	국○철			
임차인	이○미			
임차인	방○원			

임차인	손○경			
임차인	김○호			
임차인	서○현			
소유자	이○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29-6 (구월동)	101호,102호,103호	3
임차인	이○웅			
임차인	장○희			
임차인	박○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1104번길 34 (서창동)	1층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 301호,302호,303호,304호,305호 401호,402호,403호	13
소유자	이○호			
소유자	박○자			
임차인	김○영			
임차인	최○희			
임차인	이○용			
임차인	정○원			
임차인	이○덕			
임차인	박○신			
임차인	석○인			
임차인	박○양			
임차인	윤○준			
임차인	이○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16-9 (구월동)	지하101호 101호 201호 301호	4
소유자	김○동			
임차인	김○현			
임차인	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20-6 (구월동)	101호 201호	2
소유자	이○주			
임차인	변○○아			
임차인	이○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33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2
임차인	하○월			
소유자	유○희			
임차인	유○도			

임차인	이○래			
임차인	이○윤			
임차인	최○숙			
임차인	김○라			
임차인	김○은			
임차인	김○성			
임차인	김○승			
임차인	김○수			
소유자	유○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3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1
임차인	조○윤			
임차인	김○옥			
임차인	박○신			
임차인	김○훈			
임차인	하○호			
소유자	최○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5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지하105호 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 301호,302호	17
임차인	이○용			
임차인	이○인			
임차인	김○화			
임차인	신○혁			
임차인	김○효			
임차인	안○리			
임차인	조○혁			
임차인	서○남			
임차인	이○우			
임차인	김○숙			
임차인	최○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8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지하105호 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	17
임차인	최○영			
소유자	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8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지하105호 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	17

소유자	김○시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 301호,302호	
임차인	최○지			
임차인	안○오			
임차인	김○택			
임차인	심○규			
임차인	남궁○화			
임차인	경○연			
임차인	박○길			
소유자	안○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8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206호 301호,302호,303호	15
임차인	육○지			
임차인	김○현			
임차인	박○희			
임차인	고○범			
임차인	주○선			
임차인	신○화			
임차인	하○한			
임차인	김○래			
임차인	신○섭			
소유자	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0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지하105호 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 301호,302호	17
임차인	김○람			
임차인	김○주			
임차인	문○민			
임차인	장○준			
임차인	이○주			
임차인	이○진			
임차인	김○영			
임차인	박○진			
임차인	윤○남			

임차인	가○현			
소유자	최○인			
임차인	김○준			
임차인	조○훈			
임차인	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5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	13
임차인	유○정			
임차인	강○재			
임차인	문○경			
소유자	유○자			
소유자	박○구			
임차인	최○민			
임차인	박○리			
임차인	조○형			
임차인	문○준			
임차인	윤○진			
임차인	이○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9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16
임차인	장○희			
임차인	정○선			
임차인	신○근			
임차인	김○수			
임차인	박○유			
임차인	박○식			
임차인	박○수			
임차인	황○미			
소유자	임○국			
임차인	장○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5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 101호,102호,103호,104호 201호,202호,203호,204호 301호,302호,303호,304호	16
임차인	조○한			
임차인	김○미			

임차인	이○식			
임차인	김○문			
임차인	김○필			
임차인	정○영			
임차인	문○준			
소유자	이○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47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	3
임차인	전○연			
임차인	곽○근			
임차인	함○숙			
임차인	이○재			
소유자	이○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49 (구월동)	101호,102호 201호	3
임차인	이○자			
임차인	김○자			
소유자	최○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49-11 (구월동)	지하101호,지하102호,지하103호,지하104호,지하105호, 지하106호 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106호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206호 301호	19
소유자	방○포			
임차인	박○수			
임차인	정○			
임차인	김○태			
임차인	지○구			
임차인	이○무			
임차인	김○태			
임차인	이○철			
임차인	황○희			
임차인	김○룡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사업 실시계획(정정 및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13호(2017. 9. 2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정정 및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공영개발과(453-56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년9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정정)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 명 칭: 소래지구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소로3-10호선: B=6.0m, L=104.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7. 9. 26. ~ 2018. 9. 30.(정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용지조서(변경)

연번	지번 (논현동)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111-10	철	1,577	4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				
1	111-501	철	427	4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				
2	179-54	철	521	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				
2	179-110	철	204	2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				
3	111-60	도	4,641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3	111-502	도	4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계			6,739	634						
계			635	635						

□ 지장물조서(변경 없음)

연번	지번 (논현동)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소	
1	111-168	식당	1F/조립판넬/천막/스레트/벽돌/H=2.5m	257.7	79.8	177.9	오*진	남동구 장도로 ***-**-**	소망회집
			1F/조립판넬/H=2.5m	55.3	32.1	23.2			
2	111-168	식당	1F/조립판넬/천막/벽돌/스레트/H=3.5m	193.9	101.1	92.8	오*진	남동구 장도로 ***-**-**(논현동)	충북식당
		식당	1F/조립판넬/H=3.5m	78.3	20.8	57.5			쌍둥이네
			2F/조립판넬/H=3.0m(1층)	85.1	85.1	-			
			2F/조립판넬/H=3.0m(2층)	85.1	85.1	-			
4	111-94	식당	1F/조립판넬/H=3.0m	113.9	108.2	5.7			대하회집
			2F/조립판넬/천막/H=3.0m(1층)	77.6	77.6	-			
			2F/조립판넬/천막/H=3.0m(2층)	77.6	77.6	-			
			2F/슬라브/H=3.0m(1층)	120.3	56.5	63.8			
			2F/슬라브/H=3.0m(2층)	120.3	56.5	63.8			
			3F/조립식판넬/H=3.0m	24.1	21.3	2.8			
5	111-93	식당	1F/조립판넬/벽돌/H=3.5m	136.3	93.0	43.3			소래근이
		정화조		1.0	1.0	-			
6	111-92	식당	1F/조립판넬/벽돌/H=3.5m	155.5	90.8	64.7			소라회집
7	111-91	건어물가게	1F/조립판넬/H=3.5m	133.5	73.2	60.3	이*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번지 **호	수진상회
		수도계량기		1.0	1.0	-			
8	111-90	식당	2F/조립판넬/H=3.5m(1층)	80.8	80.8	-	정*숙	남동구 만수6동 ** 아파트	대우회집
			2F/조립판넬/H=3.5m(2층)	80.8	80.8	-			
			2F/조립판넬/H=3.5m(1층)	22.5	3.9	18.6			
			2F/조립판넬/H=3.5m(2층)	22.5	3.9	18.6			
			2F/스레트/목재/H=3.5m(1층)	66.4	11.4	55.0			
			2F/스레트/목재/H=3.5m(2층)	66.4	11.4	55.0			
9	111-89	식당	1F/함석/천막/H=3.5m	34.7	6.0	28.7	최*슬	논현동 휴먼시아 *단지 ***-*****	소라회집